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주)뉴부산데이케어

이용자 관리 규정

제 1장 이용자 관리

제1조【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서비스 대상 】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③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
- ④ 독거노인과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 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 이용 정원 】

① 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의 정원으로 한다. 이용 정원은 다음과 같다.

주 · 야간보호 : 34명

② 인지지원등급이 개정됨으로 정원의 10%를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모집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의한다.
- ② 온라인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하여 홍보 · 모집한다.
- ③ 오프라인 상으로는 안내 및 홍보 전단지를 자체 제작 · 전달하여 모집한다. 또한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다.

제 2장 이용자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과 계약목적】

1. 이용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도 작성하여 센터에 보관한다. 또한 센터는 「급여 비용 명세서 제공 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6조【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3.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4.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이용료)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인은 수급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항의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1. 이용료 기준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소득·재산상의 비율에 따라 (월 총 이용료의 6%, 9%)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만 부담한다.

(2)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식대비(식 4,000원), 간식비(인/일/2회 : 2,000원)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급 여
일 반	15%
기초수급자	0%
- 의료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저소득층	6%, 9%

※ 급여 변경 방법 유형

① 급여제공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1.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부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제공한다.
3.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급여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1. 급여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된 급여종류에 대해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부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3. 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 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4.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부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3. 수급자에게 비급여를 제공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을 경우

1.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 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부분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 【 권리 및 의무 】

이용자와 보호자 그리고 센터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수급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이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센터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10조 【 계약의 해제 】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수급자의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2.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수급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4.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경우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7.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 위급 시 조치 】

- ① 센터는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급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센터 측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센터는 수급자의 이용 월액 또는 기관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보호자에게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센터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 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센터가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제15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